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팔의 구조>



<손의 구조>

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2급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3급 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3급 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4급 7호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나. 인정요령

(1) 팔(손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가)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나)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다)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라)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마)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바) 팔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사) 다발성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2) 손가락의 장애는 결손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가) 결손장애

① “손가락을 상실한 자”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② 손가락이 절단되어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식부분을 포함한 손가락의 단축정도를 보아 기능장애 또는 상실 여부를 판정한다.

③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이식하여 연장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당해 손가락의 장애와 이식수술에 의해 상실하게 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장애는 동일한 상병에 의한 장애로 인정한다.

④ 4급 7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기능장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손가락의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된 경우

②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③ 두 손의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2급 9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말한다.

(3) 동일부위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수반된 경우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4) 팔과 손가락의 기능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팔(손가락)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한다.

(5)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가)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손상된 관절뼈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금속과 기타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절 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요골두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인공관절 치환 후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은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방사선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가)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 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